



제338회 임시회
2015.03.05.(목)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1.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윤 홍 창 의원 외 6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15년 02월 23일

○ 회부일자: 2015년 02월 24일

3.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설립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수용,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 제반 행·재정 업무와 관련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교육행정협의회는 공동의장인 교육감과 도지사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는 매년 9월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 라. 협의회 운영 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 의견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 마.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1조의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21세기 세계화(globalization), 지방화(localization: glocalization)의 거시적 흐름속에서 세계 각국이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추진동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간 교육·학예에 관한 협의를 제도화함으로써, 상호의견 교류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상생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교육행정협의회가 충청북도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북도교육청 간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협력의 체계화와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의 세부추진 계획과 시행규칙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2698호, 2014.5.28.>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비용 추계서

1. 비용 추계 내용

○ 재정수반 요인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에 따른 예산 추계

2. 비용 추계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시행되면 3,64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구분 \ 연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충청북도 교육행정 협의회 운영비	3,640천원	3,640천원	3,640천원	3,640천원

3. 비용 추계 상세내역

○ 기초자료 및 세부내역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3,640천원
 - 용품비: 20,000원×10종×6회=1,200,000원
 - 현수막: 100,000원×2회=200,000원
 - 외부위원 참석수당: 70,000원×3명×2회=420,000원
 - 업무협의회비: 30,000원×17명×2회=1,020,000원
 - 실무협의회비: 20,000원×10명×4회=800,000원

4. 작성자 : 충북교육청 기획관 행정6급 장영철(220-2162)